

# 「강남구립 논현노인종합복지관」 관리 · 운영 재위탁 동의안

## 심사보고서

2025. 10. 14.

복지문화위원회

의안 번호	610
----------	-----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9. 30. 강남구청장(어르신복지과)
- 나. 상정의결
  - 제33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2025. 10. 14.)
  - “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복지생활국장 : 이용달)

#### 가. 제안이유

- 관내 노인복지시설 중 논현노인종합복지관 운영법인과의 협약기간 만료(2026. 2. 28.)에 따라, 논현노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재위탁하고자 함.
- 이에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에 따라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강남구립 논현노인종합복지관 관리 · 운영

○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 근거

- 노인복지법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

- 민간위탁의 필요성

- 노인복지관 운영의 전문성의 요구

노인복지관은 지역 어르신의 특성과 복잡하고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여 대응하고,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지역사회 복지실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전문성과 풍부한 현장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의 위탁운영이 적합함.

- 운영·관리상의 효율성 제고

직영보다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이 인력·예산 측면에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며, 사업수혜자 특성, 서비스 제공 내용에 따른 목표 설정과 객관적인 실적 평가 및 지도·점검을 통해 효율성 제고가 가능함.

○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 노년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시설 관리 일체
- 노인복지관 6대 사업

\* 상담,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돌봄, 건강생활지원, 노년사회화교육, 지역자원 및 조직화,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 기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사업 및 기타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와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등

○ 위탁시설 개요

시설명	소재지	규모	시설배치
노년노인종합복지관	강남대로128길59	지하2층~지상6층 (1,010.23㎡)	프로그램실, 상담실, 식당, 사무실

- 인력현황 : 20명(정규직 15명, 계약직 5명)
- 이용대상 : 관내 60세이상 어르신(월 1,691명)

○ 민간위탁 기간 : 5년 (2026. 3. 1. ~ 2031. 2. 28.)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를 통한 적격 수탁기관 선정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구		분	금	액(원)	구성비(%)	산	출	근	거					
지	① 인	계	수	기	본	급	594,040,000	45.03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 강남구 2025년 예산사업설명서 (어르신복지과)_노인복지관 - 근로기준법 제43조 - 근로기준법 제34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장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 국민연금법 제88조 - 고용보험법 제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 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4조					
				연	장	근	무	수		당	55,081,000	4.18		
				관	리	자	수	당		2,400,000	0.18			
				가	족	수	당	4,280,000		0.32				
				정	액	급	식	비		23,400,000	1.77			
				명	절	휴	가	비		59,590,000	4.52			
				상	여	금	0	0.00						
		기	타	후	생	경	비	5,500,000		0.42				
		퇴	직	충	당	금	75,464,000	5.72						
		보	험	료	국	민	건	강		보	험	료	26,589,000	2.02
	국				민	연	금	보	험	료	35,135,000	2.66		
	고				용	보	험	료	9,375,000	0.71				
	산				재	보	험	료	4,365,000	0.33				
	장				기	요	양	보	험	3,443,000	0.26			
	소	계	898,662,000	68.13										
	②	운	영	비	경	비	여	비(국	내/국	외)	1,080,000	0.08		
							교	육	훈	련	비	6,000,000	0.45	
							입	차	료	0	0	-		
							우	편	통	신	비	3,626,000	0.27	
							유	인	물	비	150,000	0.01		
소							모	품	비	13,665,300	1.04			
수							선	유	지	비	53,641,160	4.07		
차							량	유	지	비	2,220,000	0.17		
공							공	요	금	및	제	세	43,978,000	3.33
기							타	경	비	52,318,000	3.97			
소	계	176,678,460	13.39											
③	사	업	비	243,744,000	18.48	- 직접 소요비용 계상								
지출원가 합계(A=①+②+③)			1,319,084,460	100										
수	입	원	가	④	사	용	료	0	0	- 노인복지법 제54조에 의거 무상사용				
				⑤	기	타	수	입	경	로	식	당	115,500,000	95.06
									특	화	사	업	1,200,000	0.99
어	르	신	나	들	이	4,800,000	3.95							
수입원가 합계(B=④+⑤+⑥)			121,500,000	100	-									
위탁비용(A-B)			1,197,584,460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 다. 참고사항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에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에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르되,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

##### 제5조(승인 및 동의)

-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서울 특별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그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 사무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이미영)

#### I. 동의안 제출 배경

- 본 동의안은 2026. 2. 28.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강남구립 노년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에 따라 사전에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임.
- 동의안의 형식 및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라 한다) 제6조(민간위탁 동의안)에서는 구의회에 제출하는 동의안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본 동의안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관련 조례상의 내용을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는 “적정”으로 제출됨.

#### II. 주요사항의 검토

- 금번 재위탁 대상 시설인 강남구립 노년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하나로 2006년 개관 당시부터 현재까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 위탁하려는 사무의 내용은 ▶노년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시설 관리 일체, ▶상담,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돌봄 등 노인복지관 6대 사업, ▶기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사업 및 기타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와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등이며, 위탁기간은 5년(2026. 3. 1. ~ 2031. 2. 28.)으로 제출됨.
  -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서 위탁계약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근거에 따라 노년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은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해당하며, 위탁계약기간을 5년으로 정한 부분 역시 관계 법령을 따른 것이므로 특별한 문

제점은 없음.

- 한편, 민간위탁 조례 제19조(성과평가)에 따라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강남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
- 논현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는 2025 8. 19. 관련 평가가 있었고 평가 결과 94점으로 기준 점수 75점 이상 ‘적정’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성과평가위원 총평에서 논현노인종합복지관의 스마트피트니스 사업이 수범사례로 언급되었는바 향후에도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발굴에 힘써야 할 것임.
- 참고로 2024년 노인복지시설 및 법인 지도점검 결과 논현노인종합복지관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지적 사항에 대한 사후조치 여부,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2024년 노인복지시설 및 법인 회계·지도점검 결과>		
□ 논현노인종합복지관		
지적분야	세부 지적내용	조치사항
회계분야	지출 집행 시 견적서 상 사업자등록증, 대표자명 등 누락이 있음. 상호, 주소, 대표자명, 연락처 등이 명시된 견적서를 수령토록 권고함. 기능보강사업의 경우에도, 물품 구매, 적정 가격 검토를 위한 견적서 및 타견적서를 구비하고 있으나 견적서 상 날짜 미기재 되어있어 견적서의 정확한 유효기간을 파악하기 어려움.	권고
운영분야	기능보강 준공 후 검사자로 지정된 자가 해당 사업을 계약대로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검사한 후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준공검사조서가 갖춰져 있지 않음.	권고

(자료: 어르신복지과)

### Ⅲ. 종합의견

- 노인 인구 증가 및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노인 여가 복지에 대한 수요와 관심 또한 늘고 있는 현실임을 고려해 볼 때 지역 내 대표적인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종합복지관의 안정적인 운영은 노인복지 증진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어르신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걸맞는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하려는 것은 그 타당성은 인정된다 사료되며, 노인종합복지관이 지역사회 내 어르신 여가 복지의 중추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부서의 지속적인 지도 감독과 지역별, 기관별 특색에 맞는 사업 발굴 지원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강남구립 논현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끝.